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 
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 
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 
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4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28일

발 의 자 : 강수진, 고영옥, 권영애, 김경이,  
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 이관우,  
이용진, 이인순, 임태근, 임현주,  
정기혁, 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,  
진선아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조례 제명을 “국가유공자”에서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보훈보상대상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정의(안 제2조)

다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(안 제6조)

라. 위반차량 조치(안 제7조)

마. 사용료 감면규정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

다. 부서협의 : 복지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2025. 4. 8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 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가유공자에”를 “국가유공자 등에”로, “국가유공자의”를 “국가유공자 등의”로,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북구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우선주차구역”이란 국가유공자”를 “등 우선주차구역”이란 국가유공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서울특별시”로, “구민이용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이용하는”으로 한다.

1. “국가유공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-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 본인

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

제3조 중 “국가유공자를”을 “국가유공자 등을”로, “국가유공자의”를 “국가유공자 등의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유공자”를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유공자”를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6조를 제7조로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종전의 제6조) 중 “국가유공자가”를 “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”로 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용료 감면규정)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(이용)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(제5조제2항 관련)

1. 바닥면 도안



2. 안내표지판 도안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<u>국가유공자</u>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<u>국가유공자의</u> 명예를 선양하고 <u>구민</u>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국가유공자</u>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<u>본인</u>을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공자</u> <u>등에</u> ----- ----- <u>국가유공자 등의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성북구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국가유공자 등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국가유공자 본인</u></p> <p>나. 「<u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보훈보상대상자 본인</u></p>

2. “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”  
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 
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 
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 
말한다.

3. “시설물”이란 성북구에서 설  
치·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  
화·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  
공시설을 말한다.

4. (생략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 
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 
한다)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 
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  
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  
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 
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
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 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 
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  
공자 본인

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 
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 
자 본인

2. ----- 등 우선주차구  
역”이란 국가유공자 등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3. -----이란 서울특별시 ---  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 
성북구민이 이용하는 -----  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 
-----  
----- 국가유공자 등을 -----  
-----  
----- 국가유공자 등의 -----  
-----  
-----

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.

1. 2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<신 설>

제6조(위반차량 조치)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

--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-  
----- 국가유공자 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) ① -----  
----- 국가유공자 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반차량 조치)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-----

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7조(시설물 감면규정) 구청장은  
성북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 
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 
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  
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  
여야 한다.

제8조 (생 략)

-----  
-----  
----

제8조(사용료 감면규정) 구청장은  
시설물을 사용(이용)하는 국가  
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 
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